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7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행정처분, 지도·감독 등) 확대(안 제5조제12호)
-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정비 및 신설(안 제5조3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및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9.18. ~ 2025.9.29.)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5
- 관계법규 : 별첨 6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 · 신고 및 변경 보고 · 등록 · 신고, 폐쇄, 행정처분, 지도 · 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바.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34. 공 · 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
  - 나.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마.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11. (생 략)</p> <p>12. <u>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u></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시설의 설치 보고·신고 및 변경 보고·등록·신고, 폐쇄, 행정처분, 지도·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p> <p>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p> <p>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p> <p>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p> <p>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교육시설</p> <p>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p> <p>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p>
<p>13. ~ 33. (생 략)</p> <p>34. <u>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u></p>	<p>13. ~ 33. (현행과 같음)</p> <p>34. 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p> <p>가.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p> <p>나.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p>

	<p><u>지원에 관한 사항</u></p> <p><u>다.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u></p> <p><u>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u></p> <p><u>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p> <p><u>마. 정보화에 관한 사항</u></p> <p><u>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u></p>
35. · 36. (생략)	35. · 36. (현행과 같음)

## 【별첨 2】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행정권한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최두환(02-2282-8643)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 담당	감사관	주무관	양구슬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5. 9. 23.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li> <li>○ 동 개정(안)은 상위 법 시행령에 규정한 위임 사항과 기존 수행 하던 업무의 명확화를 통해 각종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과 교육지원청에서 그간 수행해 온 고등학교 관련 사무 반영 및 범위 정비를 통해 학교지원 기능 및 중심체제를 강화하고자 함.</li> <li>○ 개정목적과 관련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li> </ul>		

【별첨 4】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22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최두환	전화번호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9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9월 16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16일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최두환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임종수(위원장), 목소희, 박지만, 여미애, 정명화, 지유빈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5조 제12호  제5조 제34호	<p>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지원청이 수행 해 온 고등학교 등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과 학교 지원 중심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원안동의	

## 관계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3호]

제26조(사무의 위임 ·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 · 사립의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제7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1.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